

# 노인학대 신고,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

##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### 노인학대는 무엇인가요?

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.

- **신체적 학대** :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- **정서적 학대** 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- **성적 학대** :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- **경제적 학대** :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- **방임** :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
- **유기** 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### 노인학대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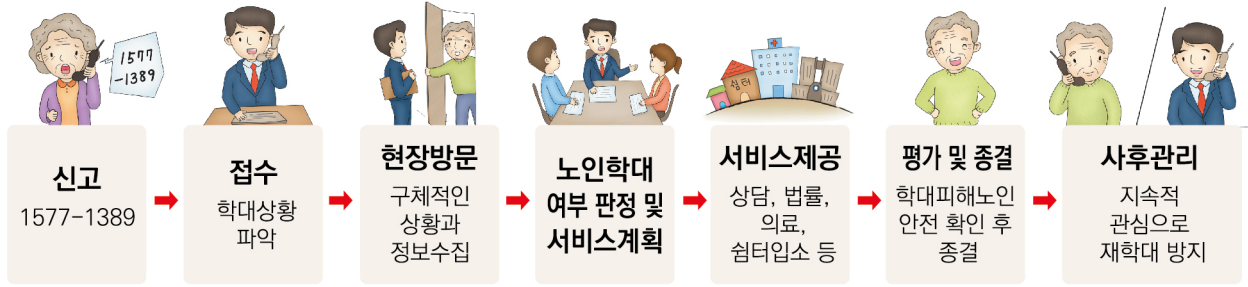
노인학대 예측징후	예	아니오
1.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		
2. 다툼,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.		
3. 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.		
4.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.		
5. 식사를 자주 거르며 노인의 외모·환경이 불결하다.		
6.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.		
7.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		

※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면 노인학대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.

##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나요?

노인학대 발견 즉시 경찰서(112) 혹은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로 신고합니다.

##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## 신분 노출 걱정으로 신고가 꺼려지는데... 보호가 되나요?

네! 노인복지법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에서는 “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한 자는 **1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1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합니다(노인복지법 제57조).

※ 또한, '16.1.25부터 (공익신고자 보호법)이 개정 및 시행되어 신고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## 노인학대로 신고하면 학대피해노인은 어떠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?

- 노인학대 판정 후 학대피해노인 또는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(상담, 치료, 법률 서비스 등)
- 일시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및 지정양로시설 연계
- 학대 재발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

## 노인학대는 어떻게 처벌 받나요?
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	•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	•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•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•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•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•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	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
**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.**

**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.**

**노인학대 신고 112 또는 1577-1389**